

# 특정 사안감사 조사결과 공개

('18.1.24.(수), 감사실)

## I. 감사개요

### □ 감사배경

- 내부제보에 따른 ○○○○학부 직원에 대한 비리제보

### □ 감사목적

- 내부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위규 사항에 대한 처분

### □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17.8.28~10.31
- 감사인원 : 감사실 2명

### □ 감사중점 사항

- 복무처리 부적정 여부,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, 공용기기 사적 사용 여부, 회의비 집행 적정성 여부

## II. 감사결과

(단위 : 원)

지적건명	처분요구			비고
	처분종류	재정상 조치 금액	신분상 조치 인원	
▶ 예산의 목적외 집행 -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과운영비 사용	경고요구	-	1명	
▶ 목적 및 집행기준에 상이한 회의비 집행 - 연구비 회의비 기준단가는 1인당 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비를 분할결재 하여 기준금액보다 초과집행	시정(환수)	33,750	-	
▶ 복무관리 불철저 - 휴가, 외출 등을 하면서 상급자의 구두승인 등은 득하였지만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	시정(환수)	240,000		